

L-라이프산업지원센터 운영규정

2025. 08. 01. 최초제정

2026. 04.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글로컬사업단에 소속된 L-라이프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 및 업무) 본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L-라이프산업지원센터 관련 전략 수립, 구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04.01.>
- 1.>
2. 글로컬사업 연계 RISE사업 전략 수립, 구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행계획서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네 생활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화산업 연계 한달빛 문화·의료관광 모델 구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현안해결 및 꿀잼도시 조성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 대학의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③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원을 둘 수 있으며 팀원은 센터의 사업 관련 교직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제3장 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글로컬사업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26.04.01.>
2. 당연직 위원은 L-라이프산업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은 대학교원 또는 센터 운영사업 관련 산업체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

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의 관한 사항
5. 센터의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제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8조(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정)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기타 지원금

②재정 관련 제반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관리 및 운영지침과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0조(규정 외 사항 처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운영규정과 대학의 관련 지침 등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센터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